



ISSUE BRIEFING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2024년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291

연구진 정호중 전문연구원
권오현 전문연구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보다 크게 밀돌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농촌인구 감소는 생활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져 그동안 제공되던 생활서비스마저 줄어 삶의 질을 악화
- 내년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에 대응하여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계획수립, 실행주체 육성, 지원기관 운영, 실천활동 촉진’ 등에 집중해야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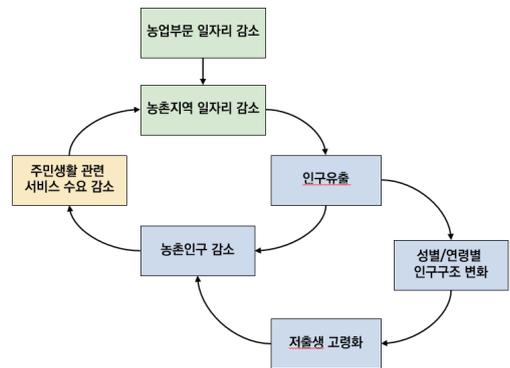
1 지금 왜 농촌경제·사회서비스에 주목하는가?

- 전라북도의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위험 단계’(0.46)로 진입하여¹⁾,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의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 무엇보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농촌 인구가 줄어드니 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 양(量)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 서비스가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면 지역 20%에 세탁소·목욕탕·음식점, 이·미용실이 없는 곳도 13%나 되는데, 시장은 관심 없고 정부는 감당하지 못해 농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문가들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유로 ‘지역경제의 침체 → 농촌지역 일자리 감소 → 외부로의 인구유출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 → 주민생활관련 서비스 수요 감소 → 인구유출’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지역사회 입장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지역사회는 농촌지역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겠음

〈그림 1〉 농촌인구-일자리 감소 악순환 구조



자료 : Hodge & Whirby(1981); 김정섭(2021) 에서 재인용

- 지역사회가 농촌지역에 특화하여 ‘농촌 경제·사회서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생활에 필요한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시장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

1) 호남지방통계청은 2021년 기준 전북의 소멸 위험지수를 발표. 위험지역 기준인 0.5보다 낮게 진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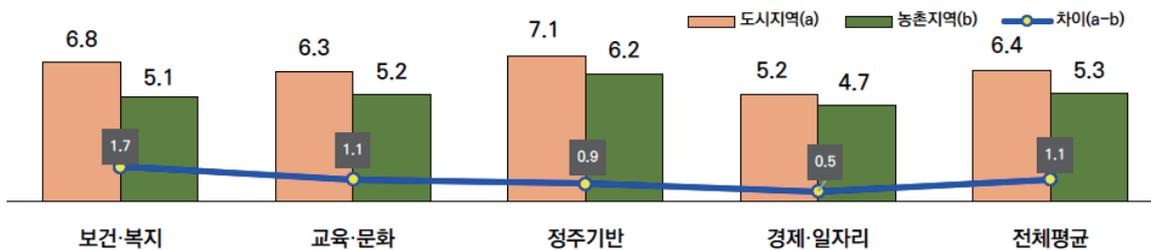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올해(2023. 8.16.)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2024. 8.17.)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서비스와 생활 상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미 여러 지역에서 농촌사회가 직면한 경제 및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주민주도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식화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 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농촌-도시의 삶의 질 사회서비스, 수준진단

- 농림축산식품부의 ‘삶의 질 기본계획(제4차)’ 추진전략 부문별로 도시민-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농촌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각 분야별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도시민에 비해 크게 밀돌고 있는데, 평균으로도 도시민(6.4)에 비해 농촌주민(5.3)의 만족도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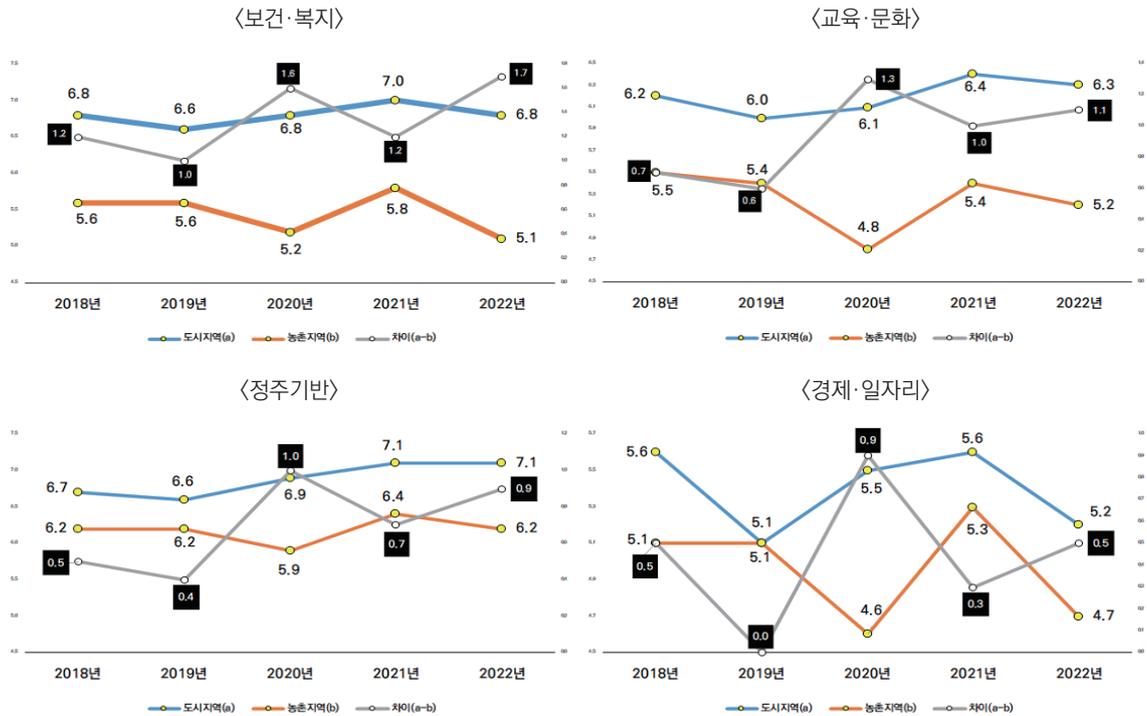
〈그림 2〉 삶의 질 수준(4대 부문)에 대한 도시-농촌 만족도 비교 (2022년)



주 : 도시민 및 농촌주민 2,700명 대상 조사, 11점 리커트척도로 조사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그림 3〉 삶의 질 수준(4대 부문)에 대한 도시-농촌 만족도 추이 비교



주 : 2020년 이전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부문을 현재 4대 부문에 맞추어 산출한 수치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지난 5년간 부문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도시-농촌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단되었다는 점이 특징임 (〈그림 3〉 연도별 추이 참조)
- 2021년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상승하여 차이가 크게 좁혀졌으나, 2022년에는 그 격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한 수준임

3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주요내용

법률의 배경과 목적

- 국회가 밝힌 법률의 제정 배경(이유)은 '①농촌지역 경제·사회서비스의 시장과 공공영역에서의 공급 여건 미비와 부족, ②서비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지방소멸 위험 가중' 등으로 요약하여 대별할 수 있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첫째,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임
- 둘째,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발전은 물론 도농간 균형발전을 제약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법률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산’이 유용하다는 선형적 사례 등에 주목하여 문제해결 방안으로 ‘농촌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농촌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하여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정목적을 밝힘

법률의 주요한 내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약칭)’은 ‘계획수립, 역량강화, 주체지정, 추진체계, 협약관리’ 등 크게 5가지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①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실태조사 (제5조~제7조)
 - 농촌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3년마다 계획 수립을 의무화(국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국가, 농림축산식품부)
 - ② 농촌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8조)
 - 농촌주민,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등 대상으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국가+지자체)
 - 이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③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제14조)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기초지자체)
 - 농촌주민 등이 협력해 자신·타인을 위해 교육·돌봄·문화 등 특화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음(국가+지자체)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국가, 농림축산식품부)
- ④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제18조)
 - 국가 차원에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국가,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발굴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기초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기초지자체)
- ⑤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제19조~제20조)
 - ‘전국 지원기관과 지역 지원기관’은 자발적 기탁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 농촌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경제·사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규모, 소요예산·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가+지자체)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의 의미와 과제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경제·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문제진단의 근거이면서 대응방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함
- ① (시장실패+시장부재) 농촌지역은 정부·시장·민간부문에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여건(인프라)이 부족하거나 불비(不備)하여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임
- ② (농촌문제 구조정리) 농촌지역은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가 부족하며, 특히 서비스 제공주체도 미흡하며, 그 결과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놓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③ (사회문제 해결방안) 현재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방식과 구조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혁신적 대응방향이 필요함
- ④ (실행주체 신규육성) 농촌지역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는 기존 방식(정부+시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의 사업조직이 중심이 되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⑤ (정책체계 전문화)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역할·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체계 등이 필요함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원정책, 기존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 제정에 앞서 부처 정책사업으로 ‘사회적농업(농장)과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농업을 통한 주민돌봄의 확장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위치해 있어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 및 건강 등 경제·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농업 정책의 주요한 배경임
-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 서비스²⁾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임
 - 지원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시설개선 비용 등을 개소당 5년간 지원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1년차 예비단계 20백만원)
- 사회적농업은 전국적으로 총 92개소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19개소로 전체의 20.6%로 높은 수준임 (‘23. 9. 현재)
 - 경기 3, 인천 3, 강원 9, 충북 9, 세종 3, 충남 12, 대전 1, 경북 9, 경남 9, 울산 1, 전북 19, 광주 1, 전남 10, 제주 3

2) 사회적농장은 장애인, 발달장애아동,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가정, 귀농희망자 (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에 치료, 농촌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을 실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그림 4〉 사회적농업의 목적과 주요 제공 서비스



자료 : 사회적농업 홈페이지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이 생활경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제공·공급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역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업’은 농촌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임
 - 지원 : 농촌주민에게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 운영비(돌봄반장 인건비 포함), 돌봄반장 활동비 등 개소당 5년간 지원(개소당 평균 90백만원, 1년차 예비단계 50백만원)
- ‘지역서비스 공동체’는 총 30개소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3개소로 전체의 10.0%를 차지함 (‘23. 9. 현재)³⁾
 - 경기 1, 인천 2, 강원 3, 충북 4, 세종 1, 충남 5, 경북 1, 경남 4, 전북 3, 전남 6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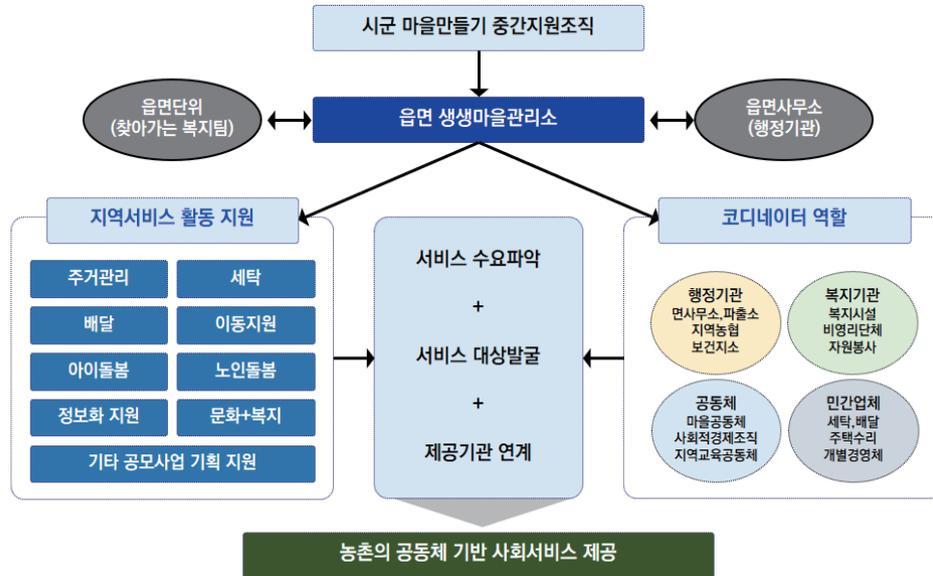
- 전라북도는 국비+지방소멸대응기금+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실행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별칭, 읍·면 생생마을 관리소)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청년 외부인력 취·창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홍보·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활동가)의 체류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시·군비를 매칭하여, 활동가 1인 월 200만원의 활동 인력비를 개소당 2년간 지원

3) 완주군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진안군 ‘비영리법인 문화공간 담쟁이’, 오산면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생생마을관리소’는 과소화 지역 서비스 제공 허브로서 기능과 역할을 상정하고, 생생마을관리소를 통해 돌봄·주거 등 다양한 문제를 지역자원 조직화·연대로 해결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⁴⁾

〈그림 5〉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전라북도 읍·면 생생마을 관리소 체계



자료 : 전라북도(2022), ‘생생마을관리소 추진방안’, 내부자료.

5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민주도, 실천사례

백운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편안한 여행을 돌보다⁵⁾

- 진안군 백운면은 주민(1,945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3%이며, 독거노인(32%), 치매 진료지원 노인(25%)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돌봄과 안전 욕구는 물론 일반 고령자의 생활돌봄 서비스 수요도 높은 상황이었음

4) 군산시(개정면)-찾아가는 건강관리 강좌,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 장수군(계남면)-공유공간 문화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영화상영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 정읍시(칠보면)-ICT 홈 복지관 & 스마트 케어, 찾아가는 밀반찬서비스 / 임실군(삼계면)-문화예술공연 활동지원, 영양돌봄 배달서비스 활동지원, 주민생활안정 교육지원 등 / 남원시(대강면)-대강면 문화복지 취약계층 문화 향유 워킹그룹 발굴 및 활동지원(정리수납서비스, 생필품 식자재 구매서비스 등), 남원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생활문화, 생활복지, 정주개선), 남원시립국악단 협력사업(지역대표문화자원 콘텐츠 관람지원) / 남원시(산내면)-산내면 사회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빨래서비스, 방과 후 돌봄, 방학 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홈트레이닝, 찾아가는 문화 예술 서비스 / 김제시(성덕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 부안군(백산면)-녹두꽃 밥상, 녹두꽃 도시락, 지역 커뮤니티 거점공간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이 내용은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bwcare.quv.kr/>)를 참고하여 작성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지역사회는 면내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시설, 여가시설의 등 인프라가 취약해 원거리의 읍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거나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함

○ 2022년 활동가들이 모여 협동조합 준비모임을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생을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여가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함

○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고령자 대상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거점시설(흰구름복지센터) 이용자 대상의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노인맞춤 식생활 돌봄〉



☞ ‘손가락 육아공동체’,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다⁶⁾

○ 완주군 고산면의 ‘손가락 육아공동체’는 완주군 북부의 ‘고산향 교육공동체’⁷⁾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공동체’임

○ ‘손가락 육아공동체’는 대부분이 귀농·귀촌 젊은 부부들로 2011년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시작하여 2015년 폐교(삼기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아이들의 육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동체 조직임

〈손가락공동체 공동육아 준비〉



○ 손가락 공동육아 양육자들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처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많은 이모, 삼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2021년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표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2023년에는 완주군의 아동 청소년·귀농귀촌·로컬푸드를 모두 아우르는 거점 공간(미래행복센터)에 자리를 틀어 활동을 이어감

6) 이 내용은 블로그 ‘나답게 너답게 함께 노는 완주군 손가락 공동육아 공동체’(2022.12.14.)에서 작성

7) 고산향교육공동체는 2011년부터 삼우초·고산초·고산중·고산고 교사, 행정, 학부모가 의제를 설정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기회도 만들어가고 있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동락점빵’,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다⁸⁾

- 영광군(묘량면)의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동점빵’은 매주 목·금요일 묘량면 42개 자연마을을 둘러 정해진 시간에 들러 주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묘량면 유일의 소매점이 문을 닫자(2011년), 주민들은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차로 30분을 가야 했고 자가용이 없는 고령자는 ‘구매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대응활동이 ‘이동점빵’이었음

〈동락점빵 이동장터〉



- 2011년 ‘구매난민을 위한 농촌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4평 규모 동락점빵을 만들고 생필품을 도매로 구매해 팔기 시작했는데,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이동점빵도 운영했음
- 2014년에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 선택이 동락점빵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조합원은 395명으로 이 중 가족 구성원이 있고 씬셈이가 큰 젊은 조합원들이 이용해주며 점빵이 유지되고 있음

☞ ‘파란사회서비스센터’, 어르신들의 생활능력을 키우다⁹⁾

- 제천시(덕산면)에서는 ‘파란사회서비스센터’가 ‘수상한 청춘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노인의 생활돌봄과 일상 생활에서의 ‘생존역량’을 키워가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돌봄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선 일하는 이가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21년 ‘파란사회서비스비즈니스센터’를 열어 활동을 시작함

〈수상한 청춘학교 스마트폰 활용 교육〉



8) 이 내용은 농민신문 ‘농촌 서비스 공백 해결사’ 지역공동체 부상(2023.8.27.)에서 작성

9) 이 내용은 민중의소리 ‘덕산 어르신들의 천국 ‘파란’과 ‘수상한 청춘학교’’(2023.10.24.)에서 작성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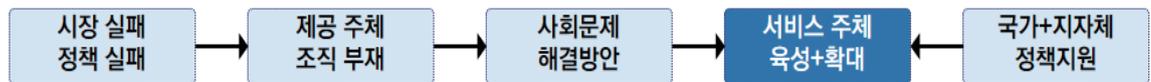
- ‘파란사회서비스센터’는 단순 주간보호 시설이 아닌 실버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했는데, 타 건물을 빌려 문화예술 강좌,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서 지원, 건강유지 체육활동 강좌 등이 열리는 쉼터이자 교육의 장인 ‘수상한 청춘학교’를 개원하였음(2022년)
- ‘수상한 청춘학교’의 대표 활동사례로는 스마트폰 교육을 꼽을 수 있는데, 은행업무, 기차표 예매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밀려나고 있어 스마트폰 교육은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생존교육’이 되고 있음

6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대응과제

대응방향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시행은 ‘①(원인진단) 시장실패+시장부재 지속, ②(문제구조) 제공주체 활동조직 미흡, ③(해결방안) 사회문제 해결·혁신 방식, ④(담당주체) 실행주체 육성·관리, ⑤(정책체계) 국가+지자체 역할과 추진체계’ 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

〈그림 6〉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과제 도출과 대응방향



-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주민 공동체, 사회적경제 방식)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식 등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정책도 이를 적극 촉진하고 있음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서 국가+지자체 역할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정책사업, 지원체계, 민간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대응과제를 검토함

(대응과제 1)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계획수립 실행

- (실태조사) 법률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서비스 여건 및 서비스 제공주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진단과 개선수준을 평가해 나가야 함
- (계획수립)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의 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광역+기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을 관리해야 함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추진방안) 기존의 유사한 계획과 같이 ‘실행보다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되는 형식적인 계획이 되지 않는 실행계획이 되어야 하며, 광역+기초 수준에서 연속적인 실태조사로 서비스 수준의 관리가 되어야 함

(대응과제 2)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실행주체 육성

- (역량강화)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상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해야 함
- (주체육성) (기초)지자체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사회 실행주체의 육성과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함
- (사회적농업) 국가는 농업활동으로 지역사회 돌봄 등을 실천할 요건을 갖춘 주체(법인·단체)를 사회적농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광역+기초)의 책임있는 관리와 후속지원 방안이 필요함
- (추진방안)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실행주체·담당조직은 지역사회의 역량(인적+물적)에 따라 다르므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함

(대응과제 3)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원기관 운영

- (전국 지원기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할 전국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전라북도에 구축 중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¹⁰⁾가 지정되도록 해야 함
- (지역 지원기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실효적인 방식으로 지역단위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정책 추진체계) 기초 지자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발굴과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므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실질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함
- (추진방안) 도내 구축 중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국 지원기관으로 지정되고, 시·군의 기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을 지역 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책임있는 대응이 중요함

10)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시설을 구축 중으로 전문기관 설립으로 운영 의무를 가짐. ‘농촌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사업비 140억원) ‘24년말 준공을 목표로 시설을 구축 중이며, 주요시설로는 서비스 제공주체 교육·인력양성 시설, 기관단체 네트워크 필요시설 등임, 전라북도는 이를 운영할 전문기관으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 중(행정안전부 설립 타당성 추진 중)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 (대응과제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실천활동 촉진

- (사례발굴)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 주민주도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실행준비를 지원해야 함
- (정책협약) 국가+지자체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담당주체를 대상으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보상 등의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부금품) 전국 및 지역 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부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어 민간 재원 조달(크라우드펀딩 등) 등을 통한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의 기획이 가능함
- (추진방안) 지자체 수준에서의 적극적 사례발굴과 확산,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주체를 통한 사회성과 보상 방식의 정책협약과 실행, 민간재원의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준비해야 함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2022), ‘생생마을관리소 추진방안’, 내부자료.
 김정섭(2022),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공청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Hodge, Lan & Martin Whitby. (1981). Rural Employment: Trends, Options, Choices. London and New York: Methuen.
 사회적농업 홈페이지(<https://socialfarm.kr/>)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bwcare.quv.kr/>)
 농민신문(2023.8.27.), ‘농촌 서비스 공백 해결사’ 지역공동체 부상’
 민중의소리(2023.10.24.), ‘덕산 어르신들의 천국 ‘파란’과 ‘수상한 청춘학교’
 블로그(2022.12.14.), ‘나답게 너답게 함께 노는 완주군 손가락 공동육아 공동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Measures to Implement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Hwang Young-Mo, Research Fellow

The living conditions in rural areas have deteriorated significantly, primarily due to a considerable lack of living services compared to their urban counterparts, stemming from a population decline. The decline in the rural population correlates with a reduced demand for resident living services, leading to a consequential reduction in the provision and supply of living services. This, in turn, exert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 response to these tangible issues faced by rural communities,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Based on Rural Commun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n August of the previous year, with enforcement scheduled for June 2024.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ct is to support resident activities that address the shortfall in services pertaining to employment, income, and social services in daily life based on local communities.

Last year, the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for quality of life was vastly lower than the satisfaction for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economy and jobs, and the gap is getting wider.

The Act outlines the key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ch involve establishing a plan, managing the main agent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promoting activities. Prior to the Act’s enforcement, the following community tasks were proposed: ① establishing a plan, ② nurturing main execution agents, ③ operating a supporting organization, and ④ promoting implementation activities.

First, the act stipulates annual condition surveys to evaluate the level of improvement. Furthermore, the Act mandates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a three-year basic plan, with its implementation overseen at both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 levels.

Second, in designating “Local Rural Service Communities,” basic local governments must actively identify and nurture the main execution agents an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delivering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Moreover, they must also formulate and implement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Third,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 Promotion & Support Centers,” being established in provinces to tackle the shortfall in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must be designated. Implementing measures to transform existing village community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into local support organizations responsibly is crucial.

Fourth, local governments must actively devise measures to identify and disseminate successful case studies, enter into and implement policy agreements that incentivize service providers for positive social outcomes,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by soliciting donations from private funds.

Key words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 Act on the Promotion of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Local Rural Service Communities, Living conditions in rural areas,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for quality of life

iSSUE
BRIEFING vol.291

Measures to Implement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ur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Hwang Young-Mo, Research Fellow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72508 688004 15
ISSN 2508-688X